

『구미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 개정(2021. 1. 1. 시행)으로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이 원칙적으로 허용됨에 따라 옥외영업에 대한 규정을 정함으로써 옥외영업 질서를 확립하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, 제2조)
-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옥외영업장 영업시간, 행위 제한 규정(안 제6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식품위생법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「구미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」은,

- 「식품위생법」의 개정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이 전면 허용됨에 따라 옥외영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허용장소, 영업시간,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함으로써 옥외영업에 따른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식품접객업소의 위생관리 및 코로나19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